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과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세미나

- 제1회의 기름유출사고 피해어민을 위한 적절한 보상방안 -

<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

저희들이 2007년 12월 7일 엄청난 재앙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와 노력으로 인해서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은 그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 국민이 참여하고 협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잘 아시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되어 있고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이 되어있고 지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희망제작소,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가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목적은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 환경에 대한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에 보상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관련된 정책의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할 역할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할 분야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초점을 뒤야할 것은 지역주민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으며 앞으로 생계가 막막한 시점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생태와 환경입니다. 인위적으로 쉽게 복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지역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피해복구에만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미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환경문제에 대한 교훈의 장이 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태안 지역을 만드는 비전의 정책의제도 이번 기회에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분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름유출 피해와 긴급방재, 복구 등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도청의 실무진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최민호 행정부지사님, 박원순 대표님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호 행정부지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워낙에 중요한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완구 지사님께서 주재도 하시고 기념사도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지사님께서 급작스럽게 서울로 회의하러 가셨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대신 나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기름유출 사고가 터졌으니까 꼭 16일 쯤 되는 날입니다.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옆에 계시는 박원순 변호사님, 희망제작소와 함께 우리 道政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보고를 주고 받는 회의석상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진전이 되는 것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 보고회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보고회를 멈추고 실국장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또 보고회를 하고 저는 저대로 자리도 못 지키고 이 문제를 하느라 허둥댔던 기억이 납니다. 불과 16일 전이었는데도 한달이 넘는 것 같은 긴 시간이었던 느낌이 듭니다.

그때는 박원순 변호사님도, 희망제작소에서 오신 분들도 아마 이렇게까지 큰 사고였는지, 큰 영향을 미칠 문제였는지 미처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온 국민들이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사고가 터졌을 때 지금은 12,500kl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 105,00kl가 유출되었다는 그 의미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그리고 해안에서부터 10Km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것이 해안가로 밀려올 것인지 아니면 대양 쪽으로 빠져나갈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때 해수부에서 방재연구소가 해양시뮬레이션을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기름이 해안에도달하는 시간이 향후 24시간 ~ 36시간 후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었습니다. 24시간 ~ 36시간이었다면 나름대로 준비할 기간을 벌였을 지도 몰랐겠지만 예상과 다르게 해안에 12시간 만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런 회의에서 논의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유조선에 구멍이 나서 기름이 계속 바다로 펄펄 분출되는데 저것을 어떻게 받아내서 다른 오일탱크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일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저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가 없는지, 그냥 계속 바다위로 쏟아지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구멍을 다가가서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TV영상을 보면서도 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던 것이 저는 현장에서 10일 동안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24시간 ~ 36시간 만에 도달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따라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해안 쪽으로 북서풍이 강하게 불었고 풍량이 4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배로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어떻게 하려고 해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손을 못 쓰고 그냥 방치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인지 우리 방재능력에 문제는 없던 것인지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막상 기름이 해안에 도달하고 나서 우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방재활동에 나섰던 그 모습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4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시겠다고 접수를 하였고 어제까지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무려 60만명이 방재작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97년 후쿠이현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때 2개월 만에 30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뤄낸 기적이라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저희들도 상당히 감동적으로 봐왔습니다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불과 16일 만에 6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다녀가시고 아마 앞으로 2개월 정도면 백만 이상도 돌파할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국민들의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 되었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는 것보다 자원봉사가 더욱 의미 있겠다면서 신혼부부가 장화를 신고 기름을 제거하는 모습, 중국집을 경영하는 분이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길은 짜장면 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짜장면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즉석에서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잠재성 속에 정말 이렇게 국가와 지역, 국민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들어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감동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문제입니다. 아까 김용웅 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당장 피해를 받으신 어업인, 비어업인, 관광업계, 숙박업소분들의 고통은 지금 하루하루 계속 짊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해안의 수산물이라고 하면 가락동 시장에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멸종하고 어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 수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는 전혀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것이고, 이런 청정해안 지역에 대한 훼손된 이미지가 언제나 되어야 복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역경제 문제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환경과 생태를 오염시킨 타르볼과 그 외에 해저에 깔린 기름 찌꺼기의 문제는 이것이 얼마동안 갈 것인지 또 언제 회복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어려운 숙제가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자치단체나 지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쏠정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깊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중앙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 중앙대로 대책을 세우되 당사자인 우리 충남과 태안군은 나름대로 전국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현장감이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여러 교수님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충남발전연구원과 희망제작소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 또한 오늘 모이신 분들은 이 지역에 있는 분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대가들이 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그 이외에 간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이 확실하게 논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道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어놓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적당한 기회가 되면 道에서 만든 대책들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면 그 보고에 대해 적당한 코멘트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대책이나 시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셔서 세미나의 결과는 저희들이 반드시 정리해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각 정치권이나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 인수위원회 파트에도 분명히 전달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런 팀에도 전달해서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로 또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세미나의 결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연말 바쁘신 와중에 우리 道까지 찾아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해주시고 이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는 쏠지구적인 문제이고 쏠국가적인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순 상임이사 〉

안녕하십니까? 연말에 바쁘신 와중에도 전국에서 각 계 전문가들이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말씀처럼 사고 당일에 저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큰 사고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위로차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가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자원봉사활동 보다도 오히려 이번 피해의 규모나 깊이, 심각성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부각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여러 기관단체들,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사실 아까 부지사님 말씀처럼 어찌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다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 배상체계나 행정지원이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이런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충남발전연구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전국 재해구호협회, 생태지평연구소,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시민환경연구소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 주실 충남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저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교류되지 않으면 깊이를 더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의 문제만도 아니고 법률과 보상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생태적인 문제 심지어는 이재민들의 피해로부터 오는 심리적 요인까지 너무나 다양한 문제에 걸쳐서 있다고 생각하며 어찌면 오늘 하루에도 논의할 수 없는 광범위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오늘 논의를 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다뤄져서 이 사건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거나 또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원활하고 합리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은 교수 〉

이재은 소장입니다. 지난 12월 7일 이후 저희 희망제작소에서도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일에 심야회의를 거쳐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이것이 미치는 환경적 요소도 있지만 사람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요소가 크기 때문에 재난관리연구소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상임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연구소 측에서 서둘러서 바로 13일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여기에 걸려있고 특히 어촌계장을 비롯한 피해어민들도 있지만 맨손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문제나 2차 피해자인 숙박업, 음식업, 관광업 종사자들 또 기존의 어장이나 양식장에서 일하고 있던 생계형 노동자들의 경우까지도 이 문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광범위하게 본다면 태안군, 서해안 지역의 어민들까지도 직접적인 피해자 그룹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잠시 전에 부지사님과 상임이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2가지 축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축으로 보고 하나는 대상을 축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시간을 축으로 해서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 축에서 보면 일단은 피해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는 법률 지원이나 피해증거 보존문제, 각종 조서문제까지도 다뤄야겠다고 봤고 현재 시점에서 해야 할 쟁점은 아무래도 증거자료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봤으며 미래적 관점에서 보니까 태안을 비롯한 피해지역들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개량복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의 미래발전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에서는 일단 태안 우리 바다 살리기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번째로 법률지원단, 두 번째로 조사연구단, 세 번째로 미래발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대상을 가지고 보면 대상에서는 제일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그리고 집단 그리고 기업 그리고 기업과 기업에 연관된 산업분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 순으로 분석의 수준을 계층화 시켜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현재는 재난관리연구소에만도 운영위원 교수님들 및 객원연구위원 교수님들이 50분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국적으로 해양수산 분야, 심리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시 재구성을 해야겠다고 해서 전문가 50명을 전국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금 30명까지 구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주 중으로 50명을 구성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가 주축이 되어서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까지 포괄하는, 오늘 이 책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공동주관기관을 제외하고도 전국 재해구호협회나 이재민사랑본부나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등 총 10개의 기관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관들 이외에도 정말 우리 태안바다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할 수 있는 기관들을 학회까지 포함해서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끝없이 문제해결을 지향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불과 1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학술회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만 20명의 전문가께서 기꺼이 동참해 주셨고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충청남도 그리고 실무에서 협의해주신 기획관님 그리고 부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 정말로 태안 우리바다와 관련된 문제들로 이런 것은 꼭 다뤄야겠다, 이런 것은 정책 아젠다로 제시해야겠다는 부분들은 스스로 없이 제기하고 수용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수 변호사 발표 후 -

< 유재호 이재민사랑본부 >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준비를 잘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피해보상 대상자 중에 생계형 미신고업 종사자들을 꼭 피해배상 대책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보고 어업은 수산업 법에 면허나

혹은 신고업, 허가업으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통 신고를 하지 않고 생계를 위해 바다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피해대상대책위원회 구성 시에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그분 스스로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관심 있는 단체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피해배상 범위 중에서 장내수입 부분이 금년도 수입 상실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 3년 ~ 5년, 길게는 10년이 갈 수도 있는데 이 주장을 꼭 협상이나 소송단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나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입증을 못하면 결국 패소하게 되는데 기름 유출로 인해 김 양식을 이 지역에서는 최소한 3년 간 못한다는 공식적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협상자료로도 쓸 수 있고 나중에 소송에서 입증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연구는 빨리 시작해야만 하고 연구하는 시간은 앞으로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시프린스호 사건도 95년에 발생했는데 3년 ~ 4년 만에 협상이 99% 정도 타결되었고 98년에 소송이 제기되고 1심 판결을 받는데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년 ~ 8년 걸렸기 때문에 연구를 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기관이나 국민들이 많은데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이나 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해안사고지원본부장 권희태 〉

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道에서 특별히 발족한 서해안 원유유출사고대책지원본부 본부장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큰 축이 배상과 관련된 부분과 복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첫째로 배상이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지 보상이라는 용어를 써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말을 잘못 쓰게 되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이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받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P&I나 IOPC 기금펀드이기 때문에 배상이라는 용어를 써야만 하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환가해서 청구할 때 지금 통상 2개의 감정평가법인과 2곳의 법률 로펌회사에서 관여하게 됩니다.

하나는 선주보험사 측이고 하나는 피해를 입은 대책위원회 측에서 선임한 평가법인과 로펌회사인데 그 금액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주보험사 측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 사이에 큰 갭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생계형 미신고 부분과 관광업계에 대한 것은 돈을 직접 주는 펀드가 영국계다 보니 외국인의 사고와 문화가 우리나라의 사고와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큰 괴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손해사장법인이나 로펌회사에서도 준비를 하겠습니까만 외국의 합리적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지금 현지에 가보면 각종 손해사장법인과 로펌에서 어촌계별로 또는 지역별로 자기들이 맡아주겠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수임을 맡을 것이 아니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아마 무슨 단체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선주보험사 측이 선임한 로펌이나 손해사장법인들과 대항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하는 것과,

두 번째로 현지에 가면 先보상을 정부에서 해달라는 플랜카드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先보상을 해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어민의 생계차원에서 先보상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고 피해금액도 정확하게 모르는 시점에서 더군다나 IOPC 펀드나 P&I 클럽으로부터 피해주민들이 얼마나 배상을 받을지 모르는, 통상 외국은 70%, 우리나라는 10%수준이라고 하는데 수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先보상을 특별법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세 번째로 여쭙보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피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문을 해줄 때도 제대로 된 영문 번역이 될 수 있도록 자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번역이 늦어져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우려해야 할 부분은 지금 지역주민들은 모 언론에서 향후 피해가 30년이라는 등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30년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50년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손해사장법인이 전부다 실사를 나가서 피해규모나 피해정도, 복구가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겠는지 또 환가를 하면 얼마가 되겠는지 일일이 조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상당히 부풀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경제적 손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뤄지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과 특히 맨손어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적어지는데 아까 통계적 소득이나 인근 유사지역의 소득 자료를 통계청에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분도 정부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희는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모든 신고를 받아서 그 신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과관계가 적합한 것인지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별도의 손해사장법인이 사정을 하겠습니까만 일단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신고를 받도록 권유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까 혼선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프리젠테이션을 보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피해를 입은 사람, 조합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재와 또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피해배상 이외에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경제적 손실피해를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개개

인이 입은 물적 피해, 인적 피해,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서철모 〉

변호사님 발표하신 자료 13페이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참 공감입니다. 시프린스호 사건 당시 성급한 방재조치의 완료로 인해 환경 복구는 물론 피해보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공감이 되고 제가 고민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는 태안뿐만 아니라 서산, 보령, 당진, 서천 등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기름유출로 인해 통상적으로 오던 관광객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 작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방재조치를 완료한 시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조치 완료시점은 환경생태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도 있고 또 법적으로 피해배상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가능한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김성수 변호사 〉

먼저 권희태 본부장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의 법률지원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역할이지 대리인의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은 맞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집에도 썼지만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대리인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뜻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서철모 〉

방재조치가 완료가 된 후에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 사업, 예컨대 문화관광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전국 TV프로에서 전국민들에게 태안은 이제 깨끗하다, 태안과 6개 지역에 걸쳐서 국민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유인 이벤트 등을 준비한다면 이것이 방재조치 완료선언은 환경생태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피해주민 간에 배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과연 이런 캠페인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 김성수 변호사 〉

쉽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국제기금이나 P&I클럽에서 보면 제주도에서 과거에 같은 사고가 났을 때 道와 民들이

자주적으로 노력해서 피해규모에 관한 언론보도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태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 이상으로 부풀려지고 확대되면 그것이 보상에서는 유리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스스로 보상을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언론에 자제를 요청시키고 이미 복구가 됐다고 홍보한 것이 주효했다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당연히 돈을 주는 입장이나 보상을 덜 주는 입장에서 평가를 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연 어느 시점에서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판단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아까 지가하락까지는 보상해주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사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크레임 매뉴얼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꼭 그것 때문에 보상 자체가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또는 보상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에는 관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단지 그와 같은 캠페인 비용조차도 보상을 받으려면 상당한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예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한 비용 내에서 일부가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분이 요청하신 것은 대체로 저도 수궁을 할 수 있고 사실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일에 대해 충실하게 구체적인 입증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고 특히 문화가 다른 외국계 기관이나 보험사에게 효과적으로 어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워낙 드물게 일어나는 일인데다가 저희로서도 생소한 이야기라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관련된 자료를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지금 국제기금에 검정인으로 선임된 그 쪽이더군요. 한국회사검정이라는 곳이 지금 국내적으로 기름오염 사고에 대해 20년 ~ 30년 동안 연구나 실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금에서도 선임을 한 것이고 이제 저희가 법률가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가능하면 인정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니까 참고를 전부 하되 너무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적으로 너무 타당성이 부족한 것을 구태여 넣으면 제가 자료집 각주에도 실었지만 지나치게 부풀리게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일까지 있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국제기금이나 보험사에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보상을 높게 받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구 자체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된 면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정부가 특별입법을 통해 先보상을 실시하는 문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심리만 높여놓고 또 상당한 금액을 보상했는데 나중에 국제기금에서 그것은 합리적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배제하면 그것을 나중에 되찾아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또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개 제정된 이후에 적용해야만 합리적 예견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합리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해서 만약 그런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국제기금의 기준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듯한 방식이나 또 피해자분들에게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것까지 줄 것 같은 인상을 너무 심어주지 않도록 정책을 준비하는 분이나 언론에 발표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해안 사고지원본부장 권희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先보상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투입한 방재비용이나 또 국립해양공원이나 자치단체가 소유한 도유재산의 경우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받은 물적 피해, 경제적 손실 보상부분에 관한 부분까지 정부가 대리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아까 분명하게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先보상을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IOPC 클레임 매뉴얼에 보면 만약 정부가 보상이나 배상을 직접 해주게 되면 공제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IOPC 클레임 매뉴얼에 보면 곳곳마다 합리적 기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김성수 변호사님께서 받을 담그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이 맨손어업이 되었다든지 또는 무허가 숙박업소,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던 분들이 어느 부분까지를 합리적 기준으로 봐야할 것인가, 다른 지역을 예로 보면 1년 간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이뤄졌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국회사감정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역사가 길고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법률회사도 굴지의 로펌을 PNI와 IOPC가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은 교수 〉

아까 이재민 사랑본부에서 오신 분의 맨손 어업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지난 16일에 저희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와 법무지평의 김성수 변호사님과 같이 태안

에 가서 조사도 하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맨손어업인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문제는 김성수 변호사님이 제출한 발제문에 맨손 어업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이 가능한 것으로 아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김성수 변호사 〉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구매뉴얼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번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업 및 해양 생산물 분야 중에 소규모로 생계형 또는 부업 수준으로 영유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수확 또는 수입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정부통계 또는 다른 공공정보와 오염영향을 받은 어업 및 유사한 영향을 받지 않은 어업의 분야조사와 같은 가능한 관련정보를 근거로 하여 평가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례를 조사해봤는데 찾지 못해서 기록으로는 신지를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제기금에서도 소규모 영세로 하는 맨손 어업 종사자의 소득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연 시프린스호 때 여수 부근에서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얼마나 받았는지는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통계나 인근지역 소득실태를 기초로 자기들이 평가를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를 줄지, 얼마를 주겠다는 등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통계소득에 제대로 잡혀있는지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이라는 것이 갯벌마다 어획의 구성이나 산출량도 다를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을지 향후에라도 소급적으로라도 파악이 가능할지 등이 의문이기는 한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청구를 해서 여기 매뉴얼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서해안사고지원본부장 권희태 〉

그런데 통상 맨손어업이나 무신고업에 대해서는 청구액의 10% 미만으로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소득이 전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IOPC펀드 본부에서는 그 사람들 문화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쪽으로 그동안의 관례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인근지역이라고 해도 맨손어업을 하는 종류가 다 틀리고 사람 수도 틀리고 거리도 틀리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정교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맨손 어업도 다 신고를 받아서 배상해 주게 되면 10% 미만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맨손어업 신고를 하면 IOPC 클레임 매뉴얼에 보면 일정부분 인정해준다고는 하지만 10%미만이면 배상받는 입장에서 대단히 억울하고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맨손어업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통계자료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단위 통계자료를 인정해주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시점에 용역을 해서 인근 지역의 소득자료를 근거로 인정해달라고 제기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각종 사업으로 어류 배양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이것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할 사항인지요?

〈 김성수 변호사 〉

엄격히 말하면 보험회사 다음으로 국제기금이 2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원의 재판 전에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우리나라 중앙지방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게 되고 피고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국제기금의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을 하면 국제기금이 자기들이 보상금을 주듯이 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화적인 차원부분은 사실 법리적인 근거만 저희가 명확히 잘 정리하고 준비만 할 수 있으면 1차적인 국제기금에서의 내부절차에 의한 배상절차에서 다소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 법원을 설득할 수 있으면 국내법원에서의 국제기금은 맨손어업자들에게 합해서 1억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의 판결을 받게 되면 역시 국제기금에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영국과의 문화차이로 그때 못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인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차명호 교수 〉

지난번에 유럽팀들과 같이 회의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태안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관광도시인지 해양도시인지 도시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배상과 보상의 절차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의 기름을 2 드림 정도를 확보해둬야만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분석을 해서 증거자료로 제시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현대정유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름들이 확보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쪽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경우를 보면 EU 가이드 라인을 보험회사들이 대부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쪽 방면으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EU 쪽에 있는 환경기관들과 협조관계를 맺어서 추후 진행되는 모니터링 과정이나 독성물 잔여여부에 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현재 先보상을 위한 특별법은 불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충남과 태안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캠페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형태에 따라 시기를 달리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의 문제를 제기해서 연안 내의 환경에 대한 홍보를 시작하려면 지금쯤 시작해도 될 것이고 하지만 바다 자체를 개방하는 데는 3Km내, 5Km내, 10Km내, 20Km내를 구분해서 계상하는 방안들이 아마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익모델을 선정하고 그 손익모델에 따라서 계상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접피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느끼고 있는지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들이 태안에 관광을 올 의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조사해둬으로써 앞으로 관광업에 미칠 수 있는 피해정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